

“월세 내기도 벅찬데 연금까지 떼라니”... ‘퇴직연금 의무화’에 뿔난 사장님들

고유찬 기자 입력 2026. 11. 1. 14:06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논평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1일 긴급 논평을 내고 “현장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로 깊은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매달 현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방식이 영세 사업주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기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실질적 퇴직 시점에 지급하므로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지만, 사외적립 방식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현금을 강제로 불입해야 한다"며 "당장의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벅찬 영세 사업주에게 고정적인 현금 유출 압박을 가중해 결국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가 대다수인 골목상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매우 높다"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 요건을 채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력과 비용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짚었다.

고용 시장 위축과 '쪼개기 알바' 양산 우려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제도적 강제성이 커질수록 고용 유지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은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게 된다"며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게 만들며,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력 부족과 수수료 전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연합회는 "전담 인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주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서 "복잡한 연금 운용 및 행정 서류 작업은 물론 매년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또 하나의 규제 폭탄"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추진 과정의 대표성 결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회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정 TF'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며 "직접 당사자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대책을 두고 사회적 합의라 일컫는 것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사업장별 근속 기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제적 현실을 직시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